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2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임직원 2인	○ 甲 :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○ 乙 : 과태료 25백만원 부과

2. 조치내용

◦ 甲 : 과태료 25백만원 부과

◦ 乙 : 과태료 25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①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②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, ③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(투자권유자문인력,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)로 통지하며, ④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,

(1) 유진투자증권㈜ A본부 甲는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(연 1회~7회)을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,

- 20x.x.xx.~20xx.xx.x.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(① 자기 계산),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x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(② 타인명의 복수 계좌),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음(③, ④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)

(2) 유진투자증권 B센터 乙(투자권유자문인력)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(연 1회~7회)을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,

- 20xx.x.xx.~20xx.x.xx.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(① 자기 계산),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x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(② 타인명의 단일 계좌),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음(③,④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)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 제1항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, 제4항